

#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263
----------	-----

제출년월일 2016. 11.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 위탁운영 목적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에 다각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설위치 : 평창읍 평창군문화복지센터 내(2층)
- 조직인원 : 4명(상근 센터장 포함, 통번역·언어발달·이중언어 사업 별도)
- 시설규모 : 6개소 / 204㎡
  - 6개소 : 사무실 1, 상담실 1, 교육장 2, 육아정보나눔터 1, 언어발달교실 1
  - 면 적 : 사무실 52㎡, 상담실 38㎡, 교육장 76㎡, 나눔터 19㎡, 언어발달교실 19㎡
- 사업비('17년기준) : 234,691천원(국비 138,267, 도비 17,955, 군비 78,469)
  - \* 연도별 보조사업, 자체사업(군비)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위탁개요

- 위탁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 위탁기간 : 2017. 1월 ~ 2019. 12월(3년간)
- 위탁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한국어 위탁교육 포함), 다문화가족통합교육(가족 통합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 상담, 홍보 등 운영사업(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자조모임,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네트워크)
  - 특화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언어영재교실 사업, 기타 군 추진사업 및 위탁 약정에 의함.

## □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 '16. 1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16. 12월

## □ 위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공신력, 다문화관련 활동 실적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센터장 및 직원 자격의 적정성

## □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

-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의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마련에 기여
- 후원금 지원 등을 통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기여

□ 관련자료

- 관련법령
- 센터직원 자격 기준

소관 관·과·소		주민생활지원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비 호
	담 당 직위·성명 (전 화)	여성가족담당 이 서 진 (330-2308)

## □ 관계규정

###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2.8.16.]

##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6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운영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센터직원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 경력자</li> <li>-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 경력자</li> <li>-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li> <li>- 시·군·구가 직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가능</li> </ul>
직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li> <li>-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경력</li> <li>※ 상담전문인력, 사무원, 방문교육지도사는 별도기준 적용</li> </ul>